

의안번호	2215274
의 퇴 인	김영환 의원
회 답 일	2025. 12. 29.
추 계 번호	25G7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경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상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접경지역 구분</th><th>청년창업중소기업*</th><th>창업중소기업</th></tr> </thead> <tbody> <tr> <td>비수도권</td><td>100%→100%</td><td>50%→50%</td></tr> <tr> <td>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td><td>—</td><td>—</td></tr> <tr> <td>과밀억제지역 밖</td><td></td><td></td></tr> <tr> <td> - 인구감소지역</td><td>100%→100%</td><td>50%→50%</td></tr> <tr> <td> - 非인구감소지역</td><td>75%→100%</td><td>25%→50%</td></tr> </tbody> </table> ※대표자의 창업 당시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경지역 구분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비수도권	100%→100%	50%→50%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	—	—	과밀억제지역 밖			- 인구감소지역	100%→100%	50%→50%	- 非인구감소지역	75%→100%	25%→50%
접경지역 구분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비수도권	100%→100%	50%→50%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	—	—																		
과밀억제지역 밖																				
- 인구감소지역	100%→100%	50%→50%																		
- 非인구감소지역	75%→100%	25%→50%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므로 법인세 및 소득세 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의 상향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바깥에 있는 非인구감소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에 국한됨(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75%→100%
 - (창업중소기업) 25%→50%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사항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접경지역 중, 김포시와 파주시가 수도권 내 非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

[표 1] 접경지역의 범위와 인구감소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고성군

주: 1) 볼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접경지역
 2) 접경지역의 범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2)에서 규정
 3)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고시 사항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 중, 非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김포시, 파주시)의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된 과세정보와 더불어 향후 해당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숫자 및 규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 자료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표 2]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개, 억원)

소재지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서울	395	74.2	617	97.6	842	173.3	946	237.6	1,114	245.2
인천	181	24.7	253	35.1	321	62.8	375	75.8	474	82.3
경기	2,224	382.7	2,696	638.9	3,095	660.4	3,497	738.4	3,716	656.3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